

외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고찰

박용수*

요 약

학교폭력이 비록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활동은 우리 사회의 한 조직의 활동인 만큼 경찰활동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하며 방관하지 않는 태도 역시 무척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A study on preventative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in foreign countries

Park yong soo*

ABSTRACT

The school violence is at a critical level today even though it occurred continuously from the past. This issue is not only limited to Korea but it could become a greater issue overseas where possession of firearms is legal. Therefore, introduction of preventative measures in Korean schools should be reviewed by studying how different policies are being applied in countries worldwide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Furthermore, the society should continuously make an effort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The attitude of regional community who reports instead of spectating and their interest towards school violence are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police activities carried out by an organization of the society.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polic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theft, police activities, school safetySchool

접수일(2015년 10월 6일), 수정일(1차: 2015년 10월 23일, 2차: 2015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2015년 10월 31일)

*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서 론

2011년 연말부터 전국적인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당하여 자살로 이어지는 학생들이 연이어 발생하므로 우리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학생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학교폭력이 비록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기에 교육당국에만 맡겨 놓아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광범위한 위기감이 형성되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검찰청·법무부·문광부 등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권이 형성된 교육의 장소로서 경찰력이 교내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2012년도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만들어져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교내에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특히, 2012년 6월 18일자로 117신고센터가 개소하면서 학교폭력은 본격적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학교폭력이 사회에 큰 위협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하나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화 된다는 점이다.

한 언론사에서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일이 커질까봐, 보복 당할까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1]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였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17신고센터이다.

아울러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정책을 표명하면서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대 내·외적으로 강조하였는데 바로 그 4대 사회악 가운데 학교폭력이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학교폭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회 안전 요소로 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폭력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를 넘어서 학생자살 등 그 폐해가 상당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진 등 불량서클이 성인 조직폭력배의 문화를 답습하고 조직폭력파도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 줌으로써 경찰에서도 많은 대책과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피해로 인한 회복이 매우 더디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가해자 역시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국 가·피해자 모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하여 이들이 또래 문화를 잘 익히고, 올바른 청소년기를 거쳐 성숙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사회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재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사실 학교와 폭력이라는 용어의 결합인데,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학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2] 학교와 폭력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범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3] 학교폭력에

1) 2013년 8월 15일 발표한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국민 안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위협요소는 아동성폭력(75.6%)> 학교폭력(72%)> 성폭력(68.2%)> 강력범죄(67.8%)> 식품안전사고(65.5%) 순으로 조사 되었다.

대한 경찰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의 개념에 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가방 들어주기, 도시락 반찬 빼앗아 먹기, 우발적으로 때리는 일과성 폭력의 패턴이었다. 학교당국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허용되던 체벌과 결상 들고 앉아있기, 팔 들고 서있기 등의 체벌을 병행하여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교권에 대한 불만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임금과 부모와 같은 군사부일체라는 인식이 마음속 깊이 인용되어 왔었으며, 훈육이 형사적·행정적 처벌보다 강인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폭력 개념은 과거와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하다.[4]

학자들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와 학교 인근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신체적, 심리적, 일회성 또는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5], 또는 ‘학교 내 또는 밖에서 학생들간 행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공격행위 및 집단 따돌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6]

2.2 학교폭력의 이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미성숙에서 성숙의 단계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 과정의 청소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청소년이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정신적, 지적, 정서적으로는 완전치 못하여 주위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고 불규칙한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기성세대와의 가치관의 대립에서 생겨나는 갈등이나 사회적 모순에 대한 반감이 청소년 비행과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을 몇가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Albert Bandura가 1977년에 출간한 「사회학습이론」을 통해서 소개된 이론으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부모나 교사에게 받은 상벌과 타인의 여러 상황에서 행하는 반응과 결과를 관찰하고 여러 정보 들을 통합하여 그 결과에 대한 규칙을 형성한다. 즉, 타인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여 새로운 폭력 기술을 습득하고 폭력에 대한 자제력이 떨어져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폭력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 기본적인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둘째,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이다.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의 대표적인 학자인 Cohen에 의하면 사회에서는 각 계층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중심문화가 있는데, 중간계층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문화와 하위 층의 청소년 문화와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중간계층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제도는 학교이며, 학교의 학업 경쟁에서 실패한 청소년과 그런 중심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위 층의 청소년들이 중심문화에 반발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여 중간계층의 가치관에 대항하면서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셋째,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이다.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Hirschi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청소년이 비행을 범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비행을 강요하는 신념보다 사회와 유대관계의 결여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행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Hirschi는 학교폭력은 자신을 사회와 묶어두는 결속력이 약했기 때문에 일어나며 모든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법률위반자이지만 자신의 비합법적 행동이 부모와 친구, 이웃 그리고 학교 등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제받는다라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청소년과 관계하고 있는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거나, 타인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학교폭력 혹은 일탈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7]

2.3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앞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범죄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유형 지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있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강요행위(한때 스타크래프트에서 따온 셔틀, 뺑셔틀, 와이파이어셔틀, 가방셔틀), 돈을 뺏는 공갈행위, 소위 친구나 후배를 때리는 폭행행위 등 외형적인 폭행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찰력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불량서클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강한 처벌을 병행하며, 교육당국에서도 강제전학, 학적부 기재 등 징계가 강화되면서 외형적인 학교폭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대신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근히 따돌린다든지 등의 정서적 폭력이 증가추세에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폭력(카카오톡 왕따, 카따)이 종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표 1> 폭력의 유형

유형	주요내용 및 방법
언어적 폭력	형법상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신체폭력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몸에 고통을 주는 행위로 주로 상해와 폭행
사이버 폭력	언어적, 모욕, 명예훼손, 위장, 집단적 무시, 사이버스토킹
금품갈취	금전을 권취하거나 가해자가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빼앗는 행위
강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따돌림 (왕따)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카카오톡, 밴드 등 각종 SNS를 통하여 최근 사이버 따돌림이 증가
불량서클	선배 학년이 후배학년을 상대로 금품갈취를 지시하거나 폭력을 조장(일진회)

3.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 현황

3.1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²⁾

학교폭력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폭력 실태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지역별·학교급별 학교폭력 양상은 어떠한지, 지역별·학교급별로 어떠한 대책들이 효과적인지, 더 나아가 개별 학교별 구체적인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 대책들이 효과적인지,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8]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20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신고성 조사로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조사 참여율이 낮아 전수조사로서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차 조사이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방법, 문항, 공개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실시하였다.[9]

이후 매년 2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로 학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표 2>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10]

구 분	기간	대상학 년	대상인 원	참여인 원	참여율
2012년 1차	1.18~ 2.20	초4~ 고3	559만	139 만명	25%

2) 이 내용은 박영만의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4-17, 2015를 참고로 요약하여 인용.

2012년 2차	8.27~10.12	초4~고3	514만	379만명	73.7%
2013년 1차	3.25~4.30	초4~고3	519만	424만명	81.7%
2013년 2차	9.9~10.18	초4~고2	454만	406만명	89.4%
2014년 1차	3.24~4.30	초4~고2	498만	459만명	91.6%

3.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3)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2차 조사에서는 8.5%(약 32만1천명), 2013년 1차 2.2%(약 9만4천명), 2013년 2차 1.9%(약 7만7천명), 2014년 1차 1.4%(약 6만2천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적이 응답하였다. 고3을 제외한 동일한 대상을 기준으로 시계열 비교할 경우에는 피해 응답률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2012년 2차 9.1% 약 31만3천명, 2013년 1차 2.5% 약 9만1천명, 2013년 2차 1.9% 약 7만7천명).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11]

<표 3>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변화[12]

응답률 (%)	12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	13년 2차	14년 1차
초	15.2	11.1	3.8	2.7	2.4
중	13.4	10.0	2.4	2.0	1.3
고	5.7	4.2	0.9	0.9	0.6

그리고 최근 실태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피해유형별 (중복응답) 로는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폭행 > 스토킹 > 사이버 괴롭힘 > 금품갈취 > 강제심부름 > 추행 순으로 발생하였다.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가 감소 하였으며, 특히 금품갈취·강제심부름 등 전통적 유형의 폭력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 집단 따돌림 · 폭행 ·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이전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스토킹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13]

<표 4> 피해유형별 응답건수(고3 포함)[14]

	2014년 1차		2013년 2차		2013년 1차	
언어 폭력	45,564	34.60 %	56,961	35.30 %	70,489	34.00 %
따돌림	22,826	17.00 %	26,549	16.50 %	34,414	16.60 %
폭행	18,535	11.50 %	18,544	11.50 %	24,248	11.70 %
스토킹	14,887	11.10 %	14,495	9.00 %	19,090	9.20 %
사이버 괴롭힘	12,490	9.30 %	15,582	9.70 %	18,861	9.10 %
금품 갈취	10,813	8.00 %	14,815	9.20 %	20,822	10.00 %
강제 심부름	6,353	4.70 %	8,618	5.30 %	12,582	6.10 %
강제 추행	5,107	3.80 %	5,623	3.50 %	6,818	3.30 %
합계	134,575		161,187		207,324	

한편,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나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가해응답률은 0.6%로, 2013년 2차 1.0% 대비 0.4%p 감소하였고 목격응답률은 7.2%로, 2013 2차 9.4% 대비 2.2%p 감소하였다.

<표 5> 학교급별 가해·목격 응답률[15]

		2013년 1차	2013년 2차	2014년 1차
가해 응답률 (%)	초	1.9	1.5	1.1
	중	1.3	0.9	0.6
	고	0.4	0.3	0.2

3) 이 내용은 김영식 교수의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 pp.171-172를 참고로 재인용 요약하였음.

목적 응답률(%)	초	9.5	11.5	10.6
	중	8.9	10.2	7.6
	고	4.9	5.6	4.1

목적응답률에서 주목할 것은 학교폭력 목적 시 ‘주변에 알려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3년 1차 70.1%→2013년 2차 75.3%→2014년 1차 79.1%). 즉,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응답건수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중·고 대상 교육과 홍보의 효과로 실태조사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4. 외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4.1 미국

미국은 1990년대부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사소한 말썽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 정학, 퇴학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16] 이 원칙은 학교가 규정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 이러한 규칙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자의 개별적인 요소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에서 마약 및 폭력이 근절되고 무기 및 술이 없도록 하며, 학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94년 ‘안전하고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The safe drug-free school and communities act of 1994)’을 제정하였고,[17] 학교 내 총기를 금지하는 총기 없는 학교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총기류·마약휴대·폭행·소란행위 등 일체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간 조정자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또래 학생이 학교 내 친구들과 사이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또래 조정’을 들 수 있다.[18]

학생들은 가정이외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슷한 또래가 모여 있다 보니 내·외적 갈등이 또래간에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을 또래의 친구들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 또래조정(Peer Mediation)이다. 또래(Peer)란 나이가 비슷하고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정도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집단이다. 조정(Mediation)은 제3자 도움에 의한 협상절차로서, 객관적인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련의 역동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과정이다. 조정은 갈등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화합되도록 도와주고, 당사자들이 협력적인 노력과 함께 생산적인 이해관계를 교환시키도록 촉진 시킨다.[19]

경찰의 개입과 관련하여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그 배경은 1970년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전국 교육협회에서 학교안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경찰과 학교가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온데서 찾을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50% 이상의 학교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에 경찰관을 파견 상주시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다. 스쿨 폴리스는 근무경력 2-5년 이상의 경찰관을 선발하며, 기본 훈련이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후 배치하고 있다.[20]

아울러 1999년 조지아 주에서 ‘학교왕따방지법(School Anti-bullying Legislation)’을 제정하고 시행한 이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학교는 교내에 왕따 사건을 신고하는 핫라인 전화번호 알림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왕따 방지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은폐를 막기 위해 학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경찰에서는 대부분의 폭행사건이 귀가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시간대에 학교정문 앞에 경찰차와 경찰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중 90%를 부

모에게 인계하거나 훈방하고 있으며, 10%만 소년법원에 송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대한 정책집행에 이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년법원의 조치는 2차적인 부수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경찰단계에서 훈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이 직접 선도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교육을 위탁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법처리에 의한 범죄자라는 오명을 줄여 장래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범죄에 관련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데 있다. 1970년대부터는 연방정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재범률이 10%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21]

4.2 영국

영국정부는 1998년 ‘The Crime and Disorder Act’라는 법을 제정하여 경찰과 학부모에게 학생지도 및 단속 의무 부여조항을 두고 청소년범죄예방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동범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지도상 필요한 경우에 야간통행금지시간을 정할 수 있고, 통행금지 위반학생을 발견하면 귀가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집에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시설에서 일단 보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2]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제를 운영하여 학교 내의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신고도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4년 학교경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영국의 전 지역에서 ‘스쿨폴리스’ 1,000여 명이 학교에 배치되어 경찰관 1인당 5개교를 담당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로써 최후 경고제가 있는데, 이는 법률을 세 번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서, 경찰은 소년법을 체포했을 때 범법행위의 형태나 심각성, 사법처리 시 유죄판결의 가능성, 자백여부 및 범죄전력, 사법처리 시 공익성 부합여부 등을 평가 후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때 평가는 위험성 요인 평가기준에 따라 행해지게 된다. 경미초범의 경우 1차 경고하고 재범 시 최종경고 후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팀에 신속히 인계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포된 경우 형사처분을 하고 있

다.[23]

그리고 청소년을 상담원으로 활용하여 피해학생의 관심수준과 눈높이에 맞춘 왕따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소년원에 해당하는 Young Offender House에서도 범죄심리학 컨설턴트가 가해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24]

4.3 핀란드

핀란드의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Kiva Koulu Program)은 학생들의 괴롭힘(bullying)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 핀란드에서는 학생 간의 괴롭힘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건 중의 하나였다. 이후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결과에서도 괴롭힘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핀란드의 따돌림 및 괴롭힘 비율은 국제평균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스웨덴 등 주변국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05년 학교복지위원회(Committee for School Welfare)를 출범시키고, 위원회에서 학생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는 재정을 마련하고 투르쿠대학(University of Truku) 연구팀에 연구예산 70억 원을 투자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프로그램 운영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09년에 핀란드 학교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에 도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오고 있다. 또한 각 학교 교사들이 Kiva 프로그램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사들을 위한 ‘교사 훈련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 모임은 학기 중 3차례 정도 있으며, Kiva 프로그램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교사 연수와 관련해서는 2009년 핀란드 교육부에서 Kiva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에 첫 3년간 무상으로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연수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총 2,800개교의 핀란드 학교 중 90%의 학교가

(2,460개교) Kiva 학교로 등록하고 Kiva 프로그램을 운영 해 오고 있다. Kiva 프로그램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는 현황 및 성과를 감독하기 위한 가상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Kiva 공식 협의회를 2년에 1회 개최하고 있다. Kiva 프로그램의 효과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전용 분석 결과, 학교폭력과 피해학생 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학교에 대한 애교심 함양 및 학습성과 향상, 학생들의 우울증 및 불안감 감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별로는 효과가 다양했는데, 4학년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중학생(7-9학년)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Kiva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Kiva 프로그램은 전체 학교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과 괴롭힘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방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방관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공감, 자기효능감,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촉진시키고자 하며,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한 태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5]

4.4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촉발시킨 것은 1982년 3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건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폭력행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강하게 제재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노르웨이 정부는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부 주도 하에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및 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전개되었다. 매니페스토 활동은 학교폭력 무관용

(Zero tolerance) 정책을 핵심 모토로 삼고 있다. 매니페스토 주체는 중앙정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유치원, 청소년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의 'Zero 프로그램(반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Zero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하에 2003년부터 운영되어 2006년까지 수행된 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스타방게르(Stavanger)대학 행동연구센터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을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참여의 단위는 3~5개 학교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프로그램 안에서 각 학교들은 교장, 교사, 학부모(학부모회의 대표), 학생(학생회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 그룹들은 세미나를 통해 1년에 6번 정도 모임을 갖는데, 이때 외부에서 초빙한 컨설턴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7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또한 1년에 2회 정도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하나의 Zero는 3~5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Zero 내 각각의 학교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학부모위원회의 부모, 학생회의 학생들을 구성하는 목표 집단이 있다. 이러한 집단은 일 년에 6번 정도 세미나를 통해 만난다. 외부의 자문가들은 학교의 세미나와 17개월간 지속되는 프로그램 마무리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학교에 봉사한다. 또한 그들은 일 년에 2번의 만남을 통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교사 지침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중요 자료로서 주요 내용은 집단 따돌림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측정(척도)과 학생과 부모 간, 조력자와 교사, 부모, 학생과 학교,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절차 모형과 안내, 학교 활동, 부모가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문제를 노출시키고 근절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강조

하는 부모용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6]

5. 외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시사점과 제도시행 방안

5.1 시사점

여러 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학생들에게 위법·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도 직접 하면서 학생들과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범죄예방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자문이나 조언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직원을 상대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자문이나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자료제공자(Resource Person)라고 하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학교 지원 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s)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경찰은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지역사회와 관련단체와 긴밀한 현조직체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경찰관이 학생들의 일탈,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NYPD SSD에서는 소시오 드라마(SOCIO DRAMAS)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LASPD는 교육활동,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교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NYPD SSD는 학교안전요원 교육훈련단(the School Safety Training Unit: SSTU)을 두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경찰과 달리 학교경찰관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특수성을 살려 학교경찰관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LASPD에서는 현장교육훈련 경찰관(Field Training Officer)을 두어 경찰학교 수료 후 치안관으로 직접 근무하기 위한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

교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27]

영국의 경우 ‘왕따 행위’ 예방활동 중점 추진으로 청소년을 상담원으로 활용, 피해 학생 관심수준·눈높이에 맞춘 ‘왕따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Safe 등)운영하여 사전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이트 내용구성, 정보 검색 방법, 관련 사이트 링크 등 설정, 집단 괴롭힘, 가정폭력 등 총 14가지 범죄 유형에 대한 기본 정보 및 관련 법률, 교사·부모 등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교육자료 게재 병행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회복시키는데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방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공감, 자기효능감,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촉진시키고자 하며,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개인적 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일이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7.23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어울림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와 행동, 인식을 길러주는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과 관련한 활동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80년 초부터 3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노르웨이와 10년 정도의 기간이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핀란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다양한 예방 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르웨이의 경우 스타방게르지역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Zero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단순히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매뉴얼만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인 교장, 학부모회, 학생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각 주체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 일정 등이 표준화되어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온 결과를 의미한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아닌 기존의 학교 시스템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이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28]

5.2 제도 도입 및 시행

미국 대도시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스쿨폴리스제도는 2012년 국회차원에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필요성과 그 역할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학교전담경찰관 193명이 정식 정원으로 반영되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을 매년 증원하여 2013년 606명에서 2014년 1,078명으로 증원하였고, 2015년에는 1,138명으로 증원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의 내실 있는 예방과 근절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을 특별채용하고 있다. 이는 대학(원)에서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학교폭력 근절과 해당 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2016년까지 243명 청소년·심리전문가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29]

영국에서 실시하는 경미조범의 경우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팀에 신속히 인계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도는 2012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가해학생의 경우 사안을 분류하여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즉결심판으로 처분하기 시작한 제도 시행은 선도심사위원회의 맞춤형 사건처리에 따라 경찰에서는 소년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년범이 조기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 및 청소년 건정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기준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은 총 237개 운영되고 있고, 위탁 프로그램으로는 외부 기관의 “사랑의 교실” 96개와 병원에서 진행되는 “표준선도 프로그램” 42개가 운영되고 있다.[30]

핀란드의 “교사 훈련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노르웨이의 “Zero 프로그램”의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정부에서는 2015년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됨은 물론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도 생명존중과 인성함양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현장에 펼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책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 전부터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생활 내에서 학업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 학생진로나 사회문제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가해학생의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

국의 예방적 활동을 우리나라 에 비추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교과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반영되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학업역량뿐 아니라 사회성 및 정서, 인성 등 정의적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본연의 목표이나 여전히 학생의 인성정서 함양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조선일보.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 절반 침묵. (http://news.chosum.com/site/data/html_dir), 2012.1.17.
- [2] 이순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제2권 제4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19-23, 2002.
- [3] 김학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개입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2013.
- [4] 최상득,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013.
- [5] 오명식, “근절되어야 할 학교 내·외 폭력”,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p.37, 1997.
- [6] 조규향, “학교폭력의 방지와 정부의 대책”,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pp.80-81, 1999.
- [7] 박영만의 2인,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1권 1호 통권 27호, p.13, 2015.
- [8] 박효정·이희연,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참여율 제고 및 결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제3호, pp.1-2, 2013.
- [9] 교육부, 2012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 [10] 교육부, 2012년~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 [11] 교육부, 2012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 [12] 교육부, 2012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 [13] 교육부, 2012년 1차,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 [14] 교육부, 2013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 [15] 교육부, 2013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 [16] James M. peden, Through a Glass Darkly : Education with Zero Tolerance, 5 The Kansas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p. 371, 2000.
- [17] 장양식, “학교폭력과 경찰대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6, 2009.
- [18] 시사저널, 학생 스스로 문제 깨닫고 개선하도록 도와야, p. 37, 2013.
- [19] 고유선, “고등학생의 또래조정 사례가 사회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16, 2014.
- [20]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p.12, 2013.
- [21]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p.4, 2012.
- [22]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p.184, 2007.
- [23]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p.15, 2012.
- [24]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p.7, 2012.
- [25] 박효정,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실태”, 교육개발원 통권 190호, pp.39-40. 2014.
- [26] 박효정,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실태”, 교육개발원 통권 190호, pp.41-43. 2014.
- [27]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pp.13-14. 2012.
- [28] 박효정,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실태”, 교육개발원 통권 190호, pp.44-46. 2014.
- [29] <http://gosi.police.go.kr/>
- [30]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2014.

[저 자 소 개]



박 용 수 (Park, Yong-soo)

1991년 2월 경남대학교 행정학사
1995년 2월 창원대학교 행정학석사
2011년 2월 경상대학교 행정학박사
2002년 3월 현재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yspark@cs.ac.kr